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23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김태호 · 강명구 · 박충권
김 건 · 우재준 · 박정하
김기웅 · 이양수 · 엄태영
윤영석 · 김성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피해의심거래계좌나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송·출금의 일시 지연·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화나 용역 등의 계약이 있다고 속여 대리입금을 시키는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유사 또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자금을 출금하거나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이용자의 피해의심거래계좌

신고에 따라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
기 피해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5, 제3
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의5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용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본인의 계좌가 피해의심거
래계좌로 이용되었다고 신고한 경우

제3조제2항 중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을 “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u>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u>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 ---. 1. 2. (현행과 같음) 3. <u>이용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본인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었다고 신고한 경우</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제2조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